2018년 10월

TBT 월간동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란?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중복 및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이는 원활한 무역의 기술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 무역기술장벽(TBT)의 예

- 기술규정 : 에너지라벨링, 에너지효율제도, 안전기준, 화학물질 등록제도 등
- 적합성평가제도 : 인증, 시험, 검사 등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사례

국제표준(IEC)에서는 복합기능 콤보형 세탁기와 일반세탁기의 정격 소비전력요건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세탁기 에너지 및 물 효율 라벨링 규제('17.6월 통보)는 구분을 두지 않고 하나의 정격 소비전력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 요건은 현행 규정 대비 30% 상향된 기준임. 따라서 사우디의 규제는 국제표준과 불일치하며, 이로 인해 제품별 측정값 계산에 있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음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사례

우리나라는 신규 의료기기 등록비에 대하여 제조지·수입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에 따라('15.5월 공표) 중국 내 제조된 의료기기와 수입 의료기기의 신규 허가신청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수입 의료기기의 수수료는 중국산 제조 의료기기의 수수료보다 2배로, 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됨

▶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사례

EU가 도입 추진 중인 ('20.9월) 광원 에너지라벨 규정은 세탁기, 냉장고 등 완제품의 에너지효율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부분품인 광원(LED 등)도 별도의 에너지 효율표시를 요구하고 있음. 동 규정은 완제품의 에너지 소비량 표기에 추가적으로 부분품에 대한 중복규제에 해당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짐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사례

인도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규제('17.5월 시행)에 따라 폐가전 제품을 30% 회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인도는 회수 시스템 체계가 부족하여 약 5%만 재활용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20년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30%으로 설정된 목표 회수율이 과도하며, 명확한 법적 · 기술적 근거가 없음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란?

▶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사례

중국은 '12.8월(한국은 '14. 4월)부터 중국강제인증(CCC)을 받는 가전제품의 비금속 재질 시험요건을 강화하였으나, 개정사항을 WTO에 통보하지 않아 규제를 늦게 알게 되었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음

▶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유예기간 부재

사례

프랑스는 휴대폰, 스마트 시계 등 무선기기에 적용되는 전자파흡수율(SAR) 규제를 시행중으로, '18.4월에 표기대상이 확대 개정되었음. WTO TBT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표후 시행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적용시간(유예기간)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동 규제는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없이 '18.7월에 채택과 동시에 시행되었음. 기업은 규제 대상제품의 모호함과 추가 시험 및 매뉴얼 준비 등 대응 시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음

▶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사례

중국 의료기기 등록 규제('18.6월 대응)에 따라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CFDA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가 인정한 자국 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고,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하여 중복시험이 발생,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 WTO 협정 발효 | 1995년 1월 1일 (123 개국)
- WTO 주요분야 | 총괄협정(WTO 설립협정), 무역협정(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
- WTO TBT 위원회 |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산하 상품무역이사회 내의 위원회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 3회/년(3월, 6월, 11월)
  - 대　　표 : 회원국의 인정된 대표자가 참석, 자문가 동반가능
  - 의　　장 : 매년 첫번째 회의에서 선출(다음해의 첫번째 회의까지 임기)
  - 의사결정 : 합의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상정
  - 언　　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 회의공개 : 일반적으로 비공개
- WTO TBT 활동
  -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 논의
  - 협정 이행 및 행정에 대한 연례 검토
  - 3년 주기 검토 : 필요시 협정의 권리와 의무사항 조정을 권고
  - 기술협력 : 경험교환 및 능력배양

목 차

Ⅰ. 월간 TBT 통계 ····· p. 5

Ⅱ. TBT 대응 사례 ····· p. 7

Ⅲ. 월간 TBT 이슈 ····· p. 9

Ⅰ. 월간 TBT 통계

▶ 통보문 현황

< 2018년 10월 통보문 현황 개요 >

총 42개국 291건 통보(전월 대비 111건 증가)

종류	9월	10월	증감수
신규	115	203	88
부록	57	69	12
정정	2	14	12
개정	6	5	-1
합계	**180**	**291**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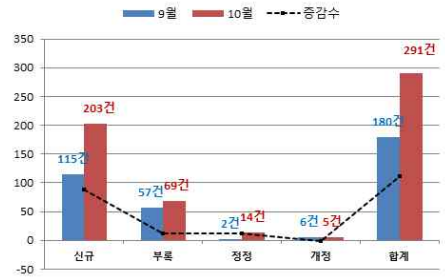

< 분야별 현황>

종류	통보 수
식의약품	87
화학세라믹	77
교통/안전	33
생활용품	29
전기전자	21
기계	9
건설	9
에너지	9
소재나노	6
농수산품	5
바이오환경	4
정보디지털	1
기타	1
합계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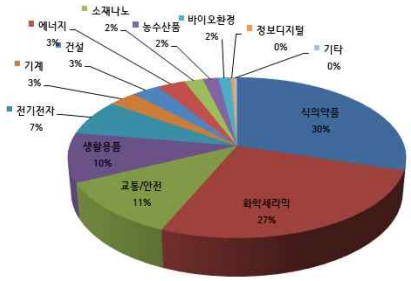

< 세부분야 TOP 10개>

Ⅰ. 월간 TBT 통계

< 국가별 현황 >

국가	건수	국가	건수	국가	건수
대만	4	아르헨티나	15	캐나다	5
말레이시아	1	에콰도르	8	케냐	9
멕시코	18	예멘	3	코스타리카	2
모잠비크	1	오만	3	콜롬비아	3
미국	38	온두라스	6	쿠웨이트	5
바레인	3	우간다	63	탄자니아	7
베트남	1	우루과이	2	태국	2
볼리비아	2	우크라이나	6	터어키	9
브라질	10	유럽연합	20	파라과이	1
브룬디	1	이스라엘	4	페루	1
사우디아라비아	3	이집트	5	필리핀	2
세이셸 공화국	1	일본	4	한국	9
스리랑카	2	중국	1		
싱가폴	1	칠레	4		
아랍에미리트	4	카타르	2	합계	42

지역	건수	비율
아프리카	87	30%
아시아	63	22%
북미	61	21%
중남미	53	18%
유럽	27	9%
오세아니아	0	0%
합계	**291**	**100%**

<지역별 현황>

국가	건수
우간다	63
미국	38
유럽연합	20
멕시코	18
아르헨티나	15
브라질	10
케냐	9
터어키	9
한국	9
에콰도르	8
합계	**291**

<발행건수 TOP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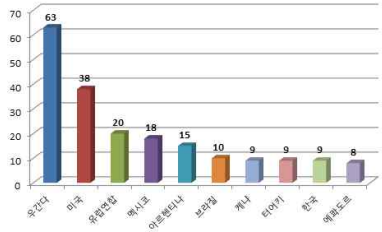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

EU, f-gas(불소화온실가스) 할당량 제도

- **규 제 명** : F-gas Regulation
- **관련부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목　　적** : 환경보호
- **대상제품** : 에어컨, 냉장고 등 f-gas 활용 제품
- **HS 코드** : 8418, 8419
- **규제내용**

'14년 EU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F-gas(HFCs, PFCs, SF6등 불소화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3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F-gas 배출 규제를 발표하고, '15년 1월에 시행하였다. 이 규제에 따르면, 2017년부터 EU 내에서 F-gas 포함 제품의 수입을 위해 수입자는 EU 집행위로부터 Quota를 할당받은 유럽 냉매제조/수입업자(Quota Holder)로부터 Quota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F-gas Quota를 보유한 EU의 Quota Holder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및 높은 Quota가격에 따른 국내 제조업계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수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우려가 제기되었다. (Quota Holder란 EU로부터 Quota를 할당받아 F-gas 사용 할당량(Quota)을 판매하는 EU 영내 F-gas 제조 및 수입업자를 총칭함)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유럽 연합 내 Quota Holder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Quota 거래가 불공정한 상황이며, 동 규제 16조 5항에 따라 EU내 F-gas 제조 및 수입 업체에게만 Quota가 할당되어 외국기업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국표원은 EU측에 2018년 6월 공식 서면질의를 송부하였고, WTO TBT 위원회 기간에 진행된 양자회의('18년 2차)를 통해 F-gas 판매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격 결정 또는 조정을 요청했으나, 아직 EU측이 한국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애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18년 3차(11월)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협의 할 예정이다.

II. TBT 대응 사례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

바레인, 에어컨 에너지라벨 및 MEPS

- **규 제 명** : Regulation on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conditioner 2015
- **관련부처** : 바레인표준청(Bahrain Standards and Metrology Directorate) 바레인 수전력부(EWA,The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 **목　　적** : 환경보호
- **대상제품** : 에어컨
- **HS 코드** : 8418
- **규제내용**

바레인은 '18.7월부터 에어컨이 만족해야 하는 최소 에너지효율(MEPS)* 기준을 강화·시행하였다. 동 규제에 따르면 바레인向 수출 에어컨은 관련 규정의 기준 및 최소에너지성능표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만족 후, 바레인 표준청(BSMD)에 에너지라벨 등록 승인 후,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MEPS는 2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1단계 : 2016.7.1., 2단계 : 2018.7.1.) 에너지라벨은 '19.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규제 검토 결과, 분리형 에어컨의 MEPS 요구사항이 에너지 등급 최상위(별 6개) 보다 높아 모순됨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분리형 에어컨의 MEPS 기준(EER)은 11.5이나, 최상위 등급 기준은 10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18년 5월 및 10월에 두 차례 바레인 측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여 에너지라벨 등급 기준을 MEPS를 고려하여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바레인 측이 한국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18년 3차(11월) WTO TBT 위원회에서 양자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해당 사항을 바레인 측과 협의 할 예정이다.

Ⅲ. 월간 TBT 이슈

□ 콜롬비아 폐전기전자제품(WEEE) 규제

□ 규제 개요

콜롬비아, 폐전기전자제품(WEEE) 규제

- 규 제 명 : WEEE 통합관리규제(Decreto No.284, 시행령 제284호), La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RAEE)
- 관련부처 : 환경지속가능발전부(MinAmbiente, 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통상산업관광부(MINCIT,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환경허가청(ANLA, National Authority of Environmental Licenses)
- 목 적 :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 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전제품)
- 규제내용 : 동 규제는 법령 제1672호('13.7월 시행, 「종합전기전자폐기물법」) WEEE 수거·관리에 대한 생산자, 유통업자, 사용자·소비자, 처리업자, 규제당국의 의무에 대한 세부규정을 추가
- TBT 통보 : 미통보('18.2.15.공표)
- 시 행 일 : '19.02.16.
- 수출현황 : 5,837만불('17년)

❑ 규제 주요 내용

□ 개요

○ 콜롬비아는 '18.2월, WEEE 통합관리규제(시행령 제284호)를 발표하여 전기전자제품(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과 폐전기전자제품(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과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자, 사용자·소비자, 처리업자, 규제당국의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EEE(전기전자제품)은 동 규정에서 스페인어로 AEE로 표기됨(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 AEE)

** WEEE(폐가전)은 동 규정에서 스페인어로 RAEE로 표기됨(los residuos de aparat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 콜롬비아는 '13.7월, WEEE 관리 법률(Law No. 1672 of 2013)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제는 이에 관련된 하위 시행령임

□ 세부사항

○ **(생산자 의무)** 전기전자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자는 WEEE 무료수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품의 라벨, 포장, 매뉴얼(사용설명서)을 통해 안내해야 함

○ **(규제당국 의무)** 통상산업관광부는 ①생산자가 라벨, 포장, 매뉴얼(사용설명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한 표기방법을 규정하고, ②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록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운영

❑ 기업 애로사항

○ **(세부규정 및 가이드 부재)** 통상산업관광부는 동 규정에 따라 발표해야 하는 세부규정(① 소비자에게 라벨, 포장, 매뉴얼·사용설명서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WEEE 수거 관련 정보* ② 생산자·유통업자 등록**)을 제공하지 않음

* 동 규정 제2장(제2.2.7A.2.1조) 생산자의 의무

** 동 규정 제3장(제2.2.7A.3.1조) AEE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록

❑ 대응 방향

○ **(정보제공)** ① 수거정보의 라벨, 포장, 부속서 표기 요건(제2.2.7A. 2.1조), ② 생산자 등록(제2.2.7A. 3.1조) 방법에 대한 규정의 조속한 공표 요청

○ **(시행유예)** 포장, 운송 등 수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약 3개월)을 고려하여 세부 규정 공표 후 최소 3개월의 시행유예기간 보장 요청

수출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기관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TBT 컨소시엄 기관별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

- 담당분야 : TBT대응 총괄
- 전화 : 043- 870-5525~26 / Email : tbt@korea.kr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 담당분야 :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에너지, 식·의약품(의료기기), 기타
- 전화 : 02-6388-6184 / Email : knowtbt@gokea.org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KSCIA)

- 담당분야 : 화학세라믹, 바이오환경, 생활용품, 식·의약품(화장품, 의약품)
- 전화 : 02-2088-7254 / Email : yjsung@kscia.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KOCEMA)

- 담당분야 : 기계, 건설, 소재나노, 교통안전
- 전화 : 070-8661-0804 / Email : terra67@kocema.org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담당분야 :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
- 전화 : 02-2164-0032 / Email : khjung21@ktr.or.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담당분야 :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
- 전화 : 02-3415-8754 / Email : sophiari@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담당분야 : 기술규제 분석,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
- 전화 : 031-428-7578 / Email : jchong@ktc.re.kr